

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

kt·kt노동조합



“지난달 급여에서 초과근무수당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되었는데요. 산정 및 차감 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?”

✓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연봉월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월별 휴가 일수 10일 초과 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.

➔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차감기준

■ 산정방법 (상시일근자 기준)

- 기준연봉월정액(기준급+역량급) ÷ 209시간(월소정근로시간) × 1.5(50%가산금) × 24시간(초과근무시간)



Q. 기준연봉월정액이 300만원인 상시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?

☞ 300만원 ÷ 209시간 × 1.5배 × 24시간 = 516,740원

※ 초과근무시간은 직원 개인이 별도 신청한 연장근무와는 무관하게 1개월 24시간으로 고정하여 계산됨

■ 차감기준

- 월 휴가 사용일수가 10일(병가 포함)을 초과할 경우 사용일수만큼 차감

⇒ 차감 전 초과근무수당 × (해당월의 working day - 휴가일수) ÷ 해당월의 working day

Q. 위 상시일근자가 2월에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 얼마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?

☞ 516,740원 × (20일 - 11일) ÷ 20일 = 232,530원(최종 지급액)

※ 2월 working day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



❓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Q. 재택근무 수당지급 기준

“재택근무 시에도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통근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나요?”

✓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회사에서 자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며, 급식통근비 또한 재택근무 기간 정상지급됩니다.